



TOMÁS J. ARAGÓN, M.D., Dr.P.H.
Director & State Public Health Officer

캘리포니아주—보건복지부
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



GAVIN NEWSOM
Governor

2023년 7월 12일

수신:

지역 보건국

제목:

직장 내 코로나-19 사례 및 발병 대응

관련 자료: [직원 및 직장 지침 더 보기](#) | [모든 지침 보기](#) | [더 많은 언어로 보기](#)

2023년 7월 12일 현재 업데이트:

- Cal/OSHA 코로나-19 예방 비용급 규정과 관련된 새로운 리소스입니다.
- 발병 보고 및 지침에 대한 참고 자료를 업데이트했습니다.
- 마스크 착용 관련 권장 사항 및 링크를 업데이트했습니다.

지역 보건국을 위한 리소스 지침

개요

코로나-19 팬데믹 동안, 캘리포니아 전역의 직장에서 코로나-19 확진 사례와 근로자 사이의 발병이 증가했습니다. 지역 보건국은 직장에서 코로나-19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하는 데 중요한

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/공보실
P.O. Box 997377 • MS 0502 • Sacramento, CA 95899-7377
(916) 440-7259 • (916) 440-7505 FAX
www.cdph.ca.gov



역할을 합니다. 이 리소스 문서는 직장에서 코로나-19 확진 사례가 식별된 관할 구역의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수단을 지역 보건국(LHD)에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법적 및 규제 요건

고용주가 코로나-19 직장 발병을 LHD에 통지해야 하는 이전의 주 전체 요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LHD는 원하는 경우 지역 명령을 통해 발병 보고를 계속 요구할 수 있으며, 지역사회에 고용주에게 필수 또는 권장 보고 기준을 전달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. LHD는 발병 보고에 대한 추가 권장 사항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([CDPH](#)) [코로나-19 발병 정의 및 보고 지침](#) 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.

고용주는 CDPH [AB 685 발병 보고 요건](#) 에 설명된 대로 직장 내 코로나-19 확진 사례 및 발병과 관련하여 LHD가 요청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비의료 직장에서, 고용주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[Cal/OSHA 코로나-19 예방 비응급 규정](#) (코로나-19 예방 규정)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. 고용주는 규정 문구, [자주 묻는 질문](#) 및 [COVID-코로나-19 예방 규정 웹페이지](#) 에 있는 기타 자료를 참조할 것을 권고합니다. 이 리소스 가이드는 Cal/OSHA 코로나-19 예방 규정의 포괄적인 요건을 다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또한 이 리소스 가이드는 의료, 교정, 보호소 또는 Cal/OSHA의 [에어로졸 전염성 질병 \(ATD\) 기준 \(타이틀 8, 섹션 5199\)](#) 이 적용되는 기타 직장 환경에서 발병을 관리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또한 LHD는 추가 세부 사항이 포함된 CDPH의 동반 자료 [고용주를 위한 직장 내 코로나-19 대응 리소스](#)를 참조하고 이를 지역사회 고용주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.

추가 리소스에 대한 링크는 이 문서의 끝에 제공됩니다. 직장 내 코로나-19 발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, LHD는 CovOHB@cdph.ca.gov 로 이메일을 보내 CDPH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.

1. LHD는 관할 구역 내 직장에서 코로나-19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- 고용주로부터 근로자 간의 코로나-19 확진 사례에 대한 의사 소통을 접수할 수 있도록 보건국의 연락 창구를 지정합니다.
- LHD는 자체적으로 코로나-19 확진 사례에 대한 권장 사항 또는 보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추가 권장 또는 필수 조치를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.
 - LHD는 전화, 팩스, 이메일 또는 웹 포털과 같은 직장 내 코로나-19 발병에 대한 정보의 접수를 위해 선호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고용주와 소통해야 합니다.

- CalCONNECT를 사용하는LHD는 고용주에게 [발병 추적 공유 포털 \(SPOT\)](#) 을 사용하여 직장 내 코로나-19 확진 사례 및 발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.
 - 추가 세부 사항은, [CDPH 발병 정의 및 보고 지침](#) 을 참조하세요.
- 코로나-19 직장 내 발병에 관한 정보를CDPH와 공유합니다.
 - LHD가 [CDPH 발병 정의 및 보고 지침](#) 에 정의된 대로 해당 사례가 발병을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, 해당 발병은 CalREDIE 발병 모듈, CalCONNECT 노출 이벤트 양식 또는LHD의 일반적인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CDPH에 보고해야 합니다.

2. 파트너들과의 정보 공유 방법 결정

- 여러 관할 구역의 근로자가 관련된 직장 발병의 경우, LHD는 발병 대응 및 정보 공유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.
 - 일반적으로, 직장이 소재한 관할 구역의 LHD는 발병 조사를 관리하고 CDPH 및 기타 관련LHD와 발병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.
 - 조사를 위해 확진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관할 구역 간에 합의합니다.
- 시설에 계약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개인들과 고용주에게 정보와 지침을 전달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.
- LHD는 [코로나-19 사례 기록 및 보고 요건](#) 에 관한 Cal/OSHA 지침을 참조하고 고용주가 리소스 및 요건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.
- 각 직장은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. LHD는 인사부서, 법무부서 및 노동조합 (해당되는 경우)과 협력하여 이 일반적인 조언을 특정 산업에 맞게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.

3. LHD는 직장 검사, 근로자 통지 요건을 숙지하고 관할 구역 내의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.

- 검사 제공, 허용되는 검사 유형, 검사 장소 및 검사 참여 근로자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[Cal/OSHA 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을 참조하세요.
- LHD는 고용주가 직장 내 코로나-19 확진 사례가 확인되었을 때 통지해야 하는 요건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추가 세부 내용은 [노동법 6409.6](#) 및 [Cal/OSHA 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을 참조하세요.
- 드물게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서, LHD 및/또는 고용주는 직장에서 코로나-19 발병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즈니스 운영을 중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4. 확진자가 업무에 복귀하는 적절한 시간 결정합니다. 해당 관할 구역의 고용주에게 이러한 요건을 전달합니다.

- LHD는 고용주가 코로나-19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[CDPH 격리 및 예방격리 지침](#) 을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. [Cal/OSHA 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은 코로나-19 감염 근로자의 업무 배제 기간을 결정할 때 CDPH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.
- LHD는 또한 Cal/OSHA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업무 복귀 요건 부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5. 고용주가 CDPH 지침 및 Cal/OSHA 코로나-19 예방 규정에 따라 직장에서 지속적인 전염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
- LHD는 발병이 발생한 고용주와 Cal/OSHA 코로나-19 예방 규정에서 요구하는 완화 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코로나-19 완화 조치에 관해 소통해야 합니다.
- LHD는 고용주가 마스크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과 마스크와 호흡보호구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[CDPH 마스크 착용 최대한 활용하기](#)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 - 고용주는 [CDPH 마스크 착용 최대한 활용하기](#) 지침에 설명된 대로 착용감과 여과성이 좋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.
 - 고밀도 직장 또는 직장 발병 기간 동안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-19 또는 기타 호흡기 감염 사례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NIOSH 승인N95 호흡보호구를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해야 합니다.
-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또는 호흡보호구를 언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추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Cal/OSHA [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을 참조하세요.
- [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및 [CDPH실내 환경의 환기, 여과, 공기 질에 대한 임시 지침](#) 에 따라 환기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합니다.
- 적절한 경우, LHD는 직장별 위험 요소 및 적절한 완화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.

추가 Cal/OSHA 리소스

- [Cal/OSHA 코로나-19 웹페이지](#)
 - [코로나-19 예방 비응급 규정, 리소스 및 자주 묻는 질문](#)
 - [코로나-19 사례 보고 및 기록 요건](#)

추가 CDPH 리소스

- [CDPH 산업보건과: 코로나-19 및 직장](#)
- [CDPH실내 환경의 환기, 여과, 공기의 질에 대한 임시 지침](#)
 - [코로나-19 및 실내 공기의 질 환기 팁](#)
- [코로나-19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주 공중보건 명령](#)
- [AB 685 코로나-19 직장 내 발병 보고 요건](#)
- [LHD를 위한 코로나-19 발병 정의 및 보고 지침](#)

2020년 6월 16일에 최초 게시